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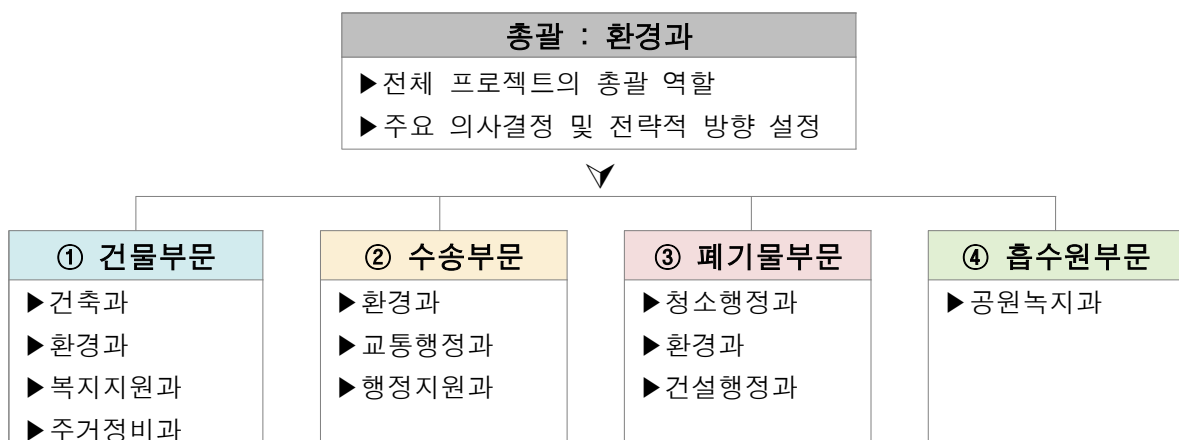
국가 및 서울시 계획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

3. 추진개요

- 가. 계 획 명: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나. 계획기간: 2025 ~ 2034년(10개년)
- 다.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
- 1)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 2)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취약성 평가, 재난방지 적응대책
 - 3) 국제·지자체간 협력, 교육·홍보 및 녹색성장 촉진
- 라. 수립체계



4. 주요내용

가. 비전 및 목표

- 1) 비전: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탄소중립 금천”
- 2) 목표: (단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중장기)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실현

나. 추진과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4개 부문 47개 이행과제

부 문	이행과제	사업부서
건 물	ZEB 보급,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	건축과, 복지지원과, 주거정비과, 환경과
수 송	전기차 보급 확대, 승용차 마일리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15개 사업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환경과
폐기물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등 9개 사업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환경과
흡수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 5개 사업	공원녹지과
4개 부문	47개 과제	9개 부서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 1) 2030년까지 온실가스 392,990톤 감축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
- 2) 2034년까지 온실가스 592,173톤 감축으로 2018년 대비 55%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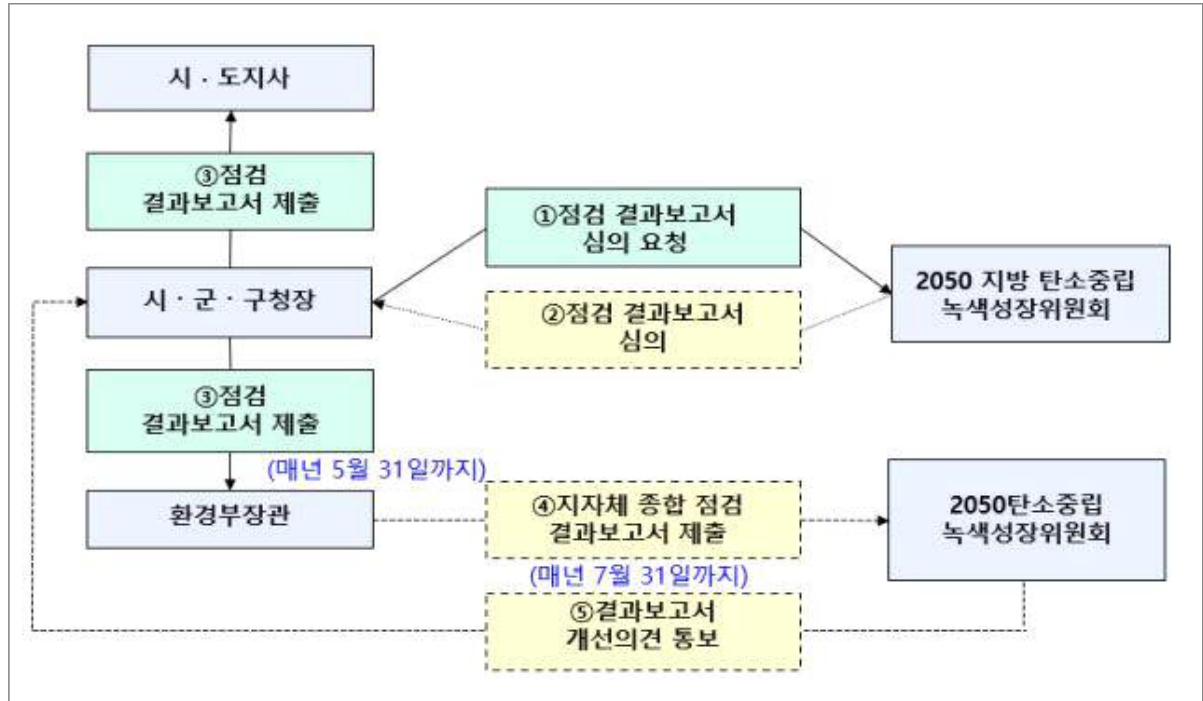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목표	100,566	170,194	218,650	270,443	325,678	392,990	455,321	499,757	545,336	592,173

※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감축목표(누적) 설정

5. 참고사항

가. 수립절차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 지방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 보고

나.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 [붙임]

다. 관계법령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 제36조

[붙임]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연번	부문	이행과제명	담당부서
1	건 물	신규 건축물 ZEB 보급 확대	건축과
2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	건축과
3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환경과
4		민간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환경과
5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확대	환경과
6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복지지원과
7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거정비과
8		노후 주택 고효율 창호 간편 시공	환경과
9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환경과
10		LED조명 보급 확대	환경과
11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환경과
1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환경과
13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환경과
14		BEMS 보급 확대	환경과
15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과
16		에코마일리지 운영	환경과
17		금천그린마일리지 운영	환경과
18		국가 전력믹스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환경과
19	수 송	전기차 보급 확대(일반)	환경과
20		전기차 보급 확대(버스)	교통행정과
21		전기차 보급 확대(택시)	교통행정과
22		전기차 보급 확대(화물)	교통행정과
23		전기차 보급 확대(어린이통학버스)	환경과
24		수소차 보급 확대	환경과
25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환경과
26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확대	행정지원과
27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환경과
28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환경과
29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퇴출	환경과
30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	환경과
31		철도 교통망 확충	교통행정과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행정과
33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과
34	폐기물	생활 폐기물 감량	청소행정과
3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RFID 보급)	청소행정과
3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음식물처리기 보급)	청소행정과
37		공공기관 종이류 폐기물 감량	환경과
38		아이스팩 재활용 확대	청소행정과
39		커피박 재활용 확대	청소행정과
40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	청소행정과
41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건설행정과
42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청소행정과
43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44	흡수원	하천생태숲 및 도시숲 조성	공원녹지과
45		옥상녹화 조성	공원녹지과
46		탄소 흡수량 증가를 위한 가로수 식재	공원녹지과
47		숲가꾸기	공원녹지과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0. 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정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차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 및 제11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